

 한국소비자원 Korea Consumer Agency	<h1>보도자료</h1> <p>“소비자 주권 시대를 열어가는 국민의 기관”</p>	 페이스북 @kcanews
		 인스타그램 @kca.go.kr
이 자료는 1월 9일(수) 조간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[방송·인터넷 매체는 1월 8일(화) 12시]		
배포일 2019년 1월 7일(월) (총 11쪽)	담당부서 안전감시국 생활안전팀	담당자 김병법 팀 장 (043-880-5831) 권동욱 조사관 (043-880-5695)
	담당부서 안전감시국 생활안전팀	

낙시어선, 안전관리 미흡해 대형 인명사고 발생 우려돼

- 선상낙시 환경개선 및 해양오염 방지 방안 마련 필요 -

바다낙시를 소재로 한 TV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면서 선상낙시가 국민적 관심을 받는 레저 활동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으나 대부분의 낙시어선이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구명장비를 제대로 구비하지 않고 있어 인명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

- “낙시어선”은 어민들이 부업으로 낙시 승객을 태워 낙시터로 안내하거나 해상에서 낙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총톤수 10톤 미만, 승선정원 22명 이하의 소형 선박임(「낙시 관리 및 육성법」 제2조, 동법 시행령 제16조).
- * 이용객 수 : 2016년 3,429,254명, 2017년 4,149,412명(720,158명 ↑) <출처 : 해양수산부>

이는 한국소비자원(원장 이희숙)이 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낙시어선 2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실태 조사 결과로 밝혀졌다.

□ 대형 인명사고 이후에도 여전히 안전관리 미흡해

조사대상 20개 낙시어선 중 7개(35.0%) 어선에서는 승객이 승선 중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하지 않았고, 18개(90.0%) 어선은 구명부환*을, 14개(70.0%) 어선은 자기 점화등**을 구비하지 않거나 비치 수량이 부족하였다.

- *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 배에서 던져주는 부력을 지닌 원형 튜브
- ** 야간에 구명부환의 위치를 알려주는 등으로 구명부환과 함께 수면에 투하되면 자동으로 점등됨.

[낙시어선 관련 규정* 위반 현황]

[단위 : 척, (%)]

구명조끼 상시 미착용	구명부환 부적합	자기점화등 부적합	소화설비 부적합
7(35.0)	18(90.0)	14(70.0)	16(80.0)
구명줄 부적합	승선자명부 부실 작성	신분증 미확인	
2(10.0)	5(25.0)	14(70.0)	

* 「낙시 관리 및 육성법」 제33조, 「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」 제16조 제1항 제3호의 별표 4

또한, 소화설비 미비치 및 비치수량 부족(16개, 80.0%), 구명줄 미보유(2개, 10.0%), 승선자명부 부실 작성(5개, 25.0%), 신분증 미확인(14개, 70.0%) 등 「낚시 관리 및 육성법」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어 대형 인명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

※ 돌고래호 전복사고('15.9.5, 18명 사망), 영흥도 낚시어선 사고('17.12.3, 15명 사망)

낚시어선 사고는 단시간 내에 인명피해가 확대될 수 있는 해상사고인 만큼 적합한 구명장비 비치는 생명과 직결될 수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.

□ 낚시어선 위생 환경개선 및 해양오염 방지 방안 마련 필요

조사대상 20개 낚시어선 중 3개(15.0%) 어선에서 승객이 음주를 했고, 2개(10.0%) 어선은 화장실 미설치, 8개(40.0%) 어선은 규정에 부적합한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었으며, 17개(85.0%) 어선은 담배꽂초를 비롯한 쓰레기를 바다에 투기하고 있어 낚시어선 위생 환경개선 및 해양오염 방지 방안 마련이 필요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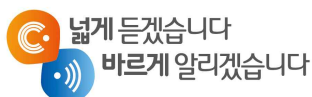
현재 낚시어선의 출·입항을 관할하는 지자체가 승객의 음주금지나 해양오염 방지 등이 포함된 ‘승객준수사항’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낚시어선 업자가 승객에게 고지 및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.

반면, 일본의 경우 유어선업*자에게 승객의 안전 확보 및 해양환경 보존에 대한 규정을 정하도록 하고, 이를 승객에게 교육시킬 의무를 부여**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낚시어선업자에게 승객에 대한 사전교육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.

* 해면과 호소에서 선박을 이용해 어장에 안내하고 이용객에게 수산물을 채취하게 하는 사업으로 우리나라의 낚시어선업과 그 정의가 유사함.

** (일본) 「유어선업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, 제15조

한국소비자원은 금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양수산부에 ▲낚시어선 안전관리·감독 강화 ▲낚시어선 안전장비 설치관리·감독 강화 ▲낚시어선 위생 환경개선 및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.



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
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www.kca.go.kr



< 붙임 >

1 일반 현황

- (정의) 낚시어선은 「어선법」에 따라 등록된 어선으로 승객을 승선시켜 낚시터로 안내하거나 해상에서 낚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총톤수 10톤 미만, 승선 정원 22명 이하인 소형 선박임.
- (낚시유선과의 비교) 선상낚시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승객들은 낚시어선과 낚시유선이란 명칭을 구분 없이 사용하고 있으나 관련 법률, 관리주체 등에서 큰 차이를 보임.
 - 낚시어선은 어민들이 부업으로 낚시 승객을 태우는 ‘낚시어선업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, 낚시유선은 레저낚시를 주목적으로 선박건조 단계부터 접안시설, 매표소 등 법령으로 정한 사업 전반의 필수요건을 갖추어야 함.

[낚시어선·유선의 비교¹⁾]

구분	낚시어선	낚시유선
관련 법률	「낚시 관리 및 육성법」	「유선 및 도선 사업법」
관계 부처	지자체(신고)	해경(면허, 5톤 이상)
안전교육	어촌어항협회 주관 연 4시간	해경 주관 연 8시간
선박 검사주기	2.5년	1년
면세유 혜택	60일 이상 조업, 120만원 이상 위판실적	X

- (운영요건) 낚시어선은 「어선법」 제13조 제1항에 따라 주로 입항·출항하는 항구 및 포구를 관할하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고(‘어선’ 등록),
 - 어선번호, 명칭 등(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신고사항)을 신고해야 함(‘낚시어선업’ 신고).
 - 즉, 지자체에 일반 어선업으로 등록된 어선이 추가로 ‘낚시어선업’을 신고할 경우 해당 영업을 할 수 있음.
- (낚시어선업 현황) 2017년 기준 낚시어선 신고척수는 4,487척, 이용객 수는 4,149,412명으로 2016년 대비 신고척수는 13척 감소했으나 이용객 수는 720,158명이 늘어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.²⁾

1) 경인일보, 「긴급진단-난립하는 낚시어선, 당신이 타는 배 어선인가 유선인가」,(2017.12.11.)

[최근 5년간 낚시어선 신고척수 및 이용객 수]

(단위 : 척, 명)

구분	2013년	2014년	2015년	2016년	2017년
신고척수 (전년대비 증감)	4,390	4,381 (▲9)	4,289 (▲92)	4,500 (211)	4,487 (▲13)
이용객 수 (전년대비 증감)	1,956,580	2,064,948 (108,368)	2,958,872 (893,924)	3,429,254 (470,382)	4,149,412 (720,158)

- (규모별 현황) 2017년 기준 낚시어선 신고척수 4,487척 중 3톤 이상 4톤 미만인 840척(18.7%)으로 가장 많고, 9톤 이상 10톤 미만 759척(16.9%), 2톤 이상 3톤 미만 690척(15.3%) 등의 순임.
- 전체 신고척수는 2016년 대비 13척이 줄었으나 7톤 이상 8톤 미만은 43척, 9톤 이상 10톤 미만은 80척이 증가해 낚시어선 이용객의 급증과 함께 규모가 큰 낚시어선의 수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.

[최근 2년간 규모별 낚시어선 신고척수]

(단위 : 척)

구분(톤)	1미만	1-2미만	2-3미만	3-4미만	4-5미만	5-6미만	6-7미만	7-8미만	8-9미만	9-10미만	합계
2016년	59	656	738	776	701	144	302	380	65	679	4,500
2017년	45	560	690	840	676	137	299	423	58	759	4,487
증감	▲14	▲96	▲48	64	▲25	▲7	▲3	43	▲7	80	▲13

- (지역별 현황) 경남, 충남, 전남이 2017년 기준 낚시어선 신고척수의 67.1%, 이용객 수의 60.4%를 차지함.

[2017년 지역별 낚시어선 신고척수 및 이용객 수]

(단위 : 척, 명)

구분	부산	인천	울산	경기	강원	충남	전북	전남	경북	경남	제주
신고척수	173	236	40	83	338	1,130	266	763	119	1,116	223
이용객수	197,233	217,368	71,380	93,064	206,016	718,866	312,366	685,978	180,017	1,103,051	364,073

※ 합계 : 신고척수(4,487척), 이용객 수(4,149,412명)

2) 「2016년 낚시어선업 현황」, 「2017년 낚시어선업 현황」, 해양수산부 발표자료, 이하 동일

- (사고현황) 최근 4년 8개월간(2013년~2017년 8월) 발생한 낚시어선 사고는 737건이며, 2014년까지는 연간 100건 이내 수준이었으나 2015년부터는 연간 200건 이상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.³⁾

[최근 4년 8개월간 낚시어선 사고 발생건수]

(단위 : 건)

구분	2013년	2014년	2015년	2016년	2017년 8월	합계
건수	77	86	206	208	160	737

- (사고원인) 사고원인은 기관고장, 추진기장애 등이 552건(74.9%)으로 가장 많았고, 충돌(접촉) 73건(9.9%), 좌초 59건(8.1%) 등의 순임.

[최근 4년 8개월간 낚시어선 사고원인별 현황]

(단위 : 건)

구분	기관고장, 추진기 장애 등	충돌(접촉)	좌초	침몰(침수)	화재	전복	계
2013년	50	14	7	5	1	0	77
2014년	59	9	10	5	3	0	86
2015년	160	15	14	8	8	1	206
2016년	157	19	17	13	2	0	208
2017년 8월	126	16	11	6	1	0	160
합계	552	73	59	37	15	1	737

- (사고지역) 충남이 190건(25.7%)으로 가장 많았고, 전남 170건(23.1%), 경남 96건(13.1%)의 순으로 낚시어선 신고척수 및 이용객 수 상위 3개 지역에서 사고가 빈번하였음.

[최근 4년 8개월간 지역별 낚시어선 사고현황]

(단위 : 건)

구분	부산	인천	울산	경기	강원	충남	전북	전남	경북	경남	제주
2013년	0	4	1	5	1	25	10	16	0	13	2
2014년	3	8	2	6	4	19	4	24	2	6	8
2015년	6	10	2	29	8	39	8	56	1	24	23
2016년	5	7	1	20	11	67	17	35	2	26	17
2017년 8월	3	6	1	12	3	40	10	39	1	27	18
합계	17	35	7	72	27	190	49	170	6	96	68

3) 「최근 5년간 낚시어선 사고 현황」 해양수산부 박완주 의원실 제출자료, 이하 동일

2

안전실태 조사 결과

조사개요

- **(조사대상)** 전국 낚시어선 20개*
 - 전남 6개, 충남 5개, 경남 5개, 강원 2개, 경기 1개, 전북 1개
 - * 2017년 기준 낚시어선 신고척수 및 이용객 수 상위 3개 지자체(경남, 충남, 전남) 위주 지역별 선정
- **(조사기간)** 2018. 9. 12. ~ 11. 14.
- **(조사내용)** 승선자명부 작성, 신분증 확인, 구명조끼 강제착용, 소화설비, 구명설비 등

□ 안전 관련 일반 규정

- **(승선자명부 작성 · 신분증 확인)** 조사대상 20개 전 낚시어선의 업자는 승선자명부를 작성했으나, 이 중 5개(25.0%)는 성별, 생년월일 등을 누락하는 등 부실 작성했고, 14개(70.0%) 어선에서는 승객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음.

[승선자명부 작성 및 신분증 확인 여부]

구분	승선자명부 작성		신분증 확인	
	작성	부실작성	확인	미확인
작성·확인 여부	15개(75.0%)	5개(25.0%)*	6개(30.0%)	14개(70.0%)
합계	20개(100.0%)		20개(100.0%)	

- **(안전교육)** 조사대상 20개 낚시어선 중 승객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한 어선은 없었음.
- **(구명조끼 의무착용)** 18개(90.0%) 어선은 출항 전 승객에게 구명조끼 착용을 안내했으나 이 중 2개 어선은 승선 중 승객이 구명조끼를 벗어도 제지하지 않았고, 2개 어선은 선원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으며, 1개 어선은 일부구간에서 착용하지 않았음.

* 작은 배로 이동하여 해상에서 낚시어선으로 갈아탔는데 작은 배로 이동하여 갈아타는 순간 까지 구명조끼 착용을 안내하지 않은 경우

[구명조끼 의무착용 안내 여부]

안내			미안내	합계
18개(90.0%)			2개(10.0%)	20개(100.0%)
선원 미착용	중간 미착용	일부구간 미착용		
2개	2개	1개		

- (음주 여부) 조사대상 20개 낚시어선 중 선원이 음주를 한 사례는 없었으나 3개(15.0%) 어선에서는 승객의 음주에 별도의 제지가 없었음.
 - 선원의 음주는 「낚시 관리 및 육성법」에서 금지하고 있으나 승객에 대해서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정하여 고시⁴⁾하는 ‘승객준수사항’에 음주 금지 조항을 두는 경우가 대부분임.
 - 동 고시사항을 낚시어선업자가 승객에게 지키도록 조치할 수 있으나⁵⁾ 실제로는 영업을 위해 제지하지 않고 있어 효과적인 음주 금지 규정이라 보기 어려움.

[승객준수사항 및 음주 예시]



- (흡연 및 오물 투기) 승객이 흡연한 19개(95.0%) 낚시어선 중 재떨이를 구비한 1개 어선, 선장이 쓰레기 바다 투기 금지를 적극적으로 안내한 1개 어선을 제외한 나머지 17개(85.0%) 어선에서는 담배꽂초 등의 쓰레기를 바다에 투기했음.

[흡연 및 오물 투기 여부]

	흡연	비흡연	합계
	19개(95.0%)	1개(5.0%)	20개(100.0%)
오물 투기	오물 투기하지 않음 (재떨이 구비, 선장의 적극적 안내)	오물 투기	
17개(85.0%)	2개(10.0%)	-	

4) 「낚시 관리 및 육성법」 제35조 제2항
 5) 「낚시 관리 및 육성법」 제36조 제3호

□ 설비 규정

- (신고확인증·승객준수사항 게시) 신고확인증은 조사대상 20개 낚시어선 중 13개(65.0%) 어선이, 승객준수사항은 4개(20.0%) 어선이 게시하지 않음.

[신고확인증 및 승객준수사항 게시 여부]

구분	신고확인증		승객준수사항	
	게시	미게시	게시	미게시
게시 여부	7개(35.0%)	13개(65.0%)	16개(80.0%)	4개(20.0%)
합계	20개(100.0%)		20개(100.0%)	

- (구명조끼 보유) 성인용 구명조끼는 조사대상 20개 전 낚시어선이 규정에 적합(최대승선인원의 120%)한 수량을 보유하고 있었으나, 11개(55.0%) 어선은 어린이용 조끼를 구비하지 않고 있었음.
- 또한, 어린이용 조끼를 구비한 9개 중 3개(15.0%) 어선은 규정된 수량에 못 미쳐 부적합했음.

[어린이용 구명조끼 보유 수량 적합 여부]

보유		미보유	합계
9개(45.0%)			
수량 적합	수량 부적합		
6개(30.0%)	3개(15.0%)		

- 한편, 구명조끼에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폐위수단(매듭 묶는 것을 요하지 않는)과 호각을 부착해야 하나, 조사대상 20개 낚시어선 중 1개(5.0%) 어선은 끈으로 묶는 형태의 조끼를 제공했고 19개(95.0%) 어선은 호각을 부착하지 않았음.

[구명조끼 폐위수단 및 호각 부착 여부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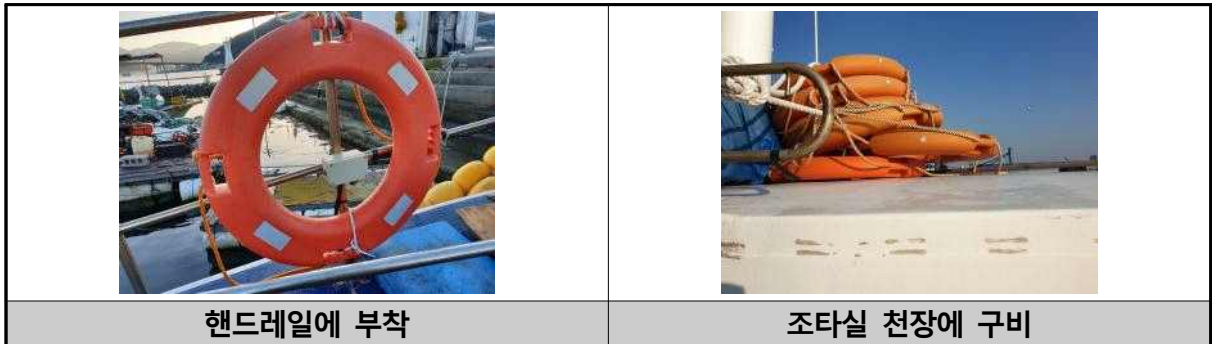
구명조끼 폐위수단		호각	
버클형	끈형(규격 부적합)	부착	미부착
19개(95.0%)	1개(5.0%)	1개(5.0%)	19개(95.0%)
합계		합계	
20개(100.0%)		20개(100%)	

[구명조끼 폐위수단 및 호각 부착 예시]



- (구명부환) 원형튜브 모양의 구명설비인 구명부환은 최대승선인원의 30%에 해당하는 수를 보유해야 함.

[구명부환 구비 예시]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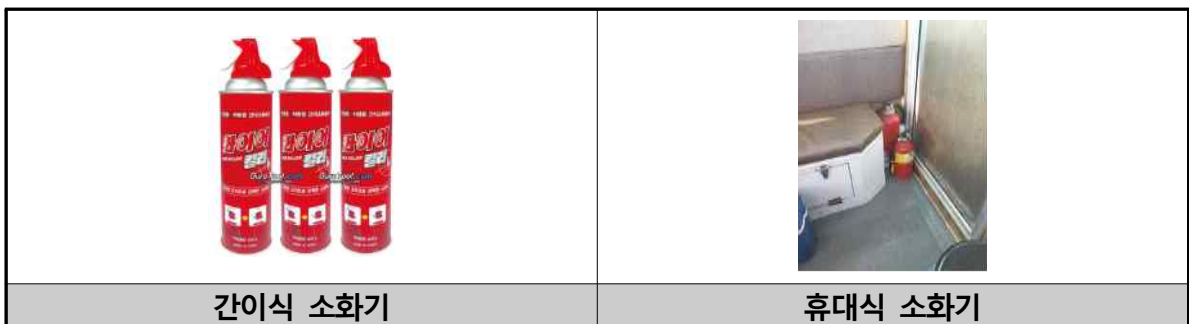
- 조사대상 20개 낚시어선 중 5개(25.0%) 어선은 구명부환을 전혀 구비하지 않았고, 나머지 15개 중 규정에 따른 수량을 보유한 어선은 2개(10.0%)에 불과했음.

[구명부환 보유 적합 여부]

보유		미보유	합계
15개(75.0%)			
수량 적합	수량 부적합		
2개(10.0%)	13개(65.0%)		

- (구명줄) 조사대상 20개 낚시어선 중 2개(10.0%) 어선이 구명줄을 보유하지 않았음.
- (소화설비) 낚시어선은 총톤수 5톤 미만인 경우 2개 이상의 간이식 소화기, 총톤수 5톤 이상일 경우 2개 이상의 휴대식 소화기를 비치해야 함.

[간이식·휴대식 소화기 예시]



- 조사대상 20개 낚시어선 중 14개(70.0%) 어선은 소화설비를 전혀 구비하지 않았고, 2개(10.0%) 어선은 소화기를 1개만 비치하여 규정을 충족하지 못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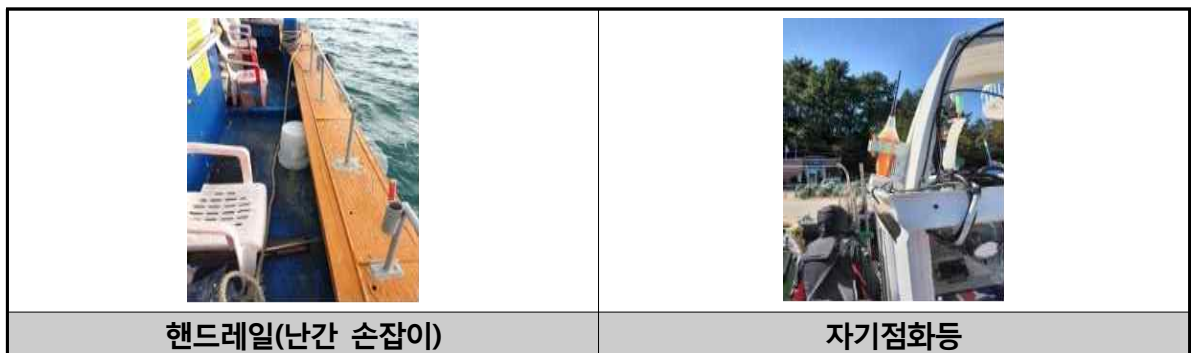
[소화설비 비치 여부]

비치		미비치	합계
6개(30.0%)		14개(70.0%)	20개(100.0%)
수량 적합 4개(2.00%)	수량 부적합 2개(10.0%)		

- (핸드레일·자기점화등) 낚시어선은 핸드레일(난간손잡이)과 1개 이상의 자기점화등*을 갖추어야 함.

* 야간에 구명부환의 위치를 알려주는 등으로 구명부환과 함께 수면에 투하되면 자동으로 점등됨.

[핸드레일 및 자기점화등 예시]



- 핸드레일은 조사대상 20개 전 낚시어선이 구비하고 있었으나, 자기점화등은 사고 시 생존자의 위치를 알릴 수 있는 중요한 구명설비임에도 14개(70.0%) 어선이 비치하지 않았음.

- (전기설비·화장실) 낚시어선은 승객의 안전을 위한 조명 등의 전기설비와 분뇨를 수면으로 배출하지 않는 방식의 화장실을 갖추어야 함.

[전기설비 및 화장실 예시]



- 전기설비는 조사대상 20개 전 낚시어선에 구비되어 있었으나, 규정에 맞는 수면 비배출식 화장실은 10개(50.0%) 어선에만 설치되어 있었음.

[수면 비배출식 화장실 설치 여부]

미설치		설치	합계
10개(50.0%)		10개(50.0%)	20개(100.0%)
수면 배출식	화장실 미설치		
8개(40.0%)	2개(10.0%)		